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8. 19 선고 2020가단44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 변호사 임선영, 전단샘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7. 8.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0. 2.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4. 9. 접수 제146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7. 12. 21. C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6. 24. ‘C는 원고에게 6,044,9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가소37799).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8. 3. 8. 위와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같은 법원 2018차전602).

나. C의 모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20. 2. 13.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E(장녀), C(장남), F(차남), G(삼남), H(사남), I(차녀), J(삼녀), K(오남), 피고(육남)가 있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0. 2. 13.경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20. 4.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군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무자력인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해당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사해 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을 제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방공무원으로 안양소방서에 근무하던 피고는 2007. 5. 25. 익산소방서로 전근하여 부모님이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면서 그때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병간호는 물론이고 요양병원비 등을 부담하며 망인을 봉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되는 관리비와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점, 피고가 위와 같이 부모님의 봉양을 위해 익산소방서로 전근할 당시 C를 비롯한 피고의 형제자매들은 잠정적으로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부모님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의 부(父) L가 2012. 3. 27. 사망하자 L 소유의 군산시 M 답 2,351㎡에 관하여도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L의 위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형제자매들 사이의 위와 같은 잠정적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취지에서 장남인 C뿐만 아니라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도 모두 실질적으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거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호

[별지]

부 동 산 의 표 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군산시 [] 의 3필지 [] 아파트 [] 동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면 적 : 제7층 [] 호 59.97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전라북도 군산시 [] 대 12676㎡

2. 전라북도 군산시 [] 대 3775㎡

3. 전라북도 군산시 [] 대 5440㎡

4. 전라북도 군산시 [] 대 823㎡

대지권의 종류 : 1, 2, 3, 4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22714분의 33.79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관할, [] 소유)

